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6. 1 선고 2020가단5671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망 A의 소송수계인

1. B

2.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최유덕

피고D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규

변론 종결2021. 5. 11.

판결 선고2021. 6. 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 1. 피고와 망 E 사이에 강원 횡성군 F 대 124m² 및 그 지상 목조 스투트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74.5m²에 관하여 2016. 8.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16. 8. 10. 접수

제194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 피고는 원고들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E와 A는 교제하는 사이였다. E는 2014. 11. 22.경 A에게 'E가 A로부터 3차례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월 2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6. 12. 25.까지 원금을 상환하기로 하며, 만약 위 기한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E가 거주하고 있는 강원 횡성군 F 대 124m² 및 그 지상 목조 스테이지층 단층 근린생활시설 74.5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A에게 대물변제로서 양도한다'는 취지의 차용증(갑 제1호증 = 갑 제4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E는 2015년에 암 진단을 받았고 2016. 6.경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호스피스(hospice) 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1) 2016. 8. 9. 이 사건 부동산을 둘째 딸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16. 8. 10. 접수 제1940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2) 2016. 8. 9. 강원 횡성군 G 전 991㎡를 신국현에게 대금 2,900만원에 매도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횡성등기소 2016. 8. 10. 접수 제1940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의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였다.

다. E는 2016. 8. 17. 사망하였고, 첫째 딸 H, 둘째 딸 피고, 아들 I) 이 E의 재산상 권리 · 의무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라. A는 이 사건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자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9. 7.자 2016카단764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16. 9. 7. 접수 제21514호로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졌다.

마. A는 2020. 8. 24.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11. 10. 사망하였다. 자녀들인 원고들이 A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이 사건 소송수계를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4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횡성군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1) 주위적 청구 : E가 원고에 대하여 5,000만원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6. 8. 9. 그 소유의 부동산을 일거에 처분한 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하면, E는 2016. 12. 25.까지 차용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A에게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E가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행위를 하였고, 피고는 E의 이러한 채무불이행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A의 E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를 어렵게 만들었으므로 이는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A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대여금 채권 상당액인 5,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E의 상속인으로서 원고들에게 상속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5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등 참조).

(2) A가 이 사건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자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9. 7.자 2016카단764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2020. 8. 24.에 이르러서야 사해행위 취소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A가 E와 교제하는 사이였고, 이 사건 차용증에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정도로 E의 재산상태를 잘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처분행위 직후에 위와 같은 가처분결정까지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A는 가처분결정을 받을 당시에 취소원인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은 E의 첫째 딸 H이 낭비벽이 있어 E가 H에게 집안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니 소비를 줄이라는 취지에서 보여주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며, E가 A로부터 실제로 5,0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A는 당시 신용불량 상태이어서 E에게 빌려줄 돈이 없었고 오히려 E가 제공한 무허가주택(강원 횡성군 M)에서 거주하였으며 E의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였고 주장한다.

(2) 원고들은 E가 작성한 처분문서로서 이 사건 차용증이 있다는 점만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그 외에는 대여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간접정황들을 전혀 주장·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2014년 무렵 A와 E는 교제하는 사이였고 A는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E에게 타인으로부터 큰 돈을 빌려 써야 하는 경제적 필요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증의 존재만으로는 A가 E에게 5,0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따라서 A에게 E에 대한 5,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상덕

1) 피고는 I(J생)이 실제로는 H(K생)의 아들인데 사정상 E(L생)의 아들로 가족관계등록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이유로 친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 제기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의 주된 쟁점도 아니므로, 일단은 현행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I이 E의 공동상속인인 것으로 본다.